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. 4. 5 선고 2017가단1147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5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. 12. 17. 접수 제83045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1999. 5. 20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동호

별지